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2001. 4. 19. 제정
2002. 4. 19. 개정
2002. 5. 14. 개정
2003. 1. 6. 개정
2004. 1. 19. 개정
2004. 4. 27. 개정
2009. 10. 21. 개정
2012. 7. 18. 개정
2016. 2. 18. 개정
2018. 12. 18. 개정
2022. 1. 19. 개정
2022. 5. 12. 개정
2023. 12. 7. 개정

제1장 총 칙<신설 2018.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회사”라 한다)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6, 2022.5.12>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회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5.12>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신설 2018.12.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2.5.12, 2023.12.07>

② 위원회는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이사회,

주주, 채권자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외이사인 위원을 결의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임한다. <개정 2004.1.19, 2018.12.18, 2022.5.12>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내부감사부서를 두며, 내부감사부서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내부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4.27, 2018.12.18, 2022.5.12>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① 위원회는 이사회, 집행기관 및 다른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② 감사위원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주요주주와 혈연 등 특수한 관계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2.5.12>

[본조신설 2018.12.18]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위원 중 선임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12>

[중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16.2.18, 2018.12.18>

제6조(위원회의 권한)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회사는 위원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회의 개최 이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 경영진, 재무담당임원, 내부감사부서장 및 외부감사인 등에게 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2.5.12>

③ 위원회는 이사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5.12>

④ 위원회는 필요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이사회를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이 지체없이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5.12>

⑥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5.12>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한 경우로서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5.12>

[중전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04.4.27, 2012.7.18>

제6조2(권한위임)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부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2.5.12>

1.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등 내부감사 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3. 감사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중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5.12>]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2.5.12>]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위임받은 내부감사부서의 장의 직무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5.12>

[본조신설 2016.2.18] [종전 제5조2에서 제6조2로 이동 <2018.12.18>]

제7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이사가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관계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04.1.19>

제3장 위원회 운영 <신설 2018.12.18.>

제8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6.2.18, 2018.12.18, 2022.5.12>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사장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2.18]

제9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사회를 업무로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중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04.1.19, 2022.5.12>

제10조(성립과 결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개정 2022.5.12>

②<삭제 2004.1.19>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중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18.12.18>]

제11조(제안) ① 위원회의 의안은 위원장, 사장 또는 각 위원이 발의한다.

② 위원장 외의 위원이 의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중전 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22.5.12>

제12조(부의사항) ① 위원회에서 심의·결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19, 2004.4.27, 2012.7.18, 2022.5.12>

1. 결산안
2.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토
3.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4.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5. 위원회의 임시이사회 소집요구
6. 위원회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7. 위원회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사항
8.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
9.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0.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1.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사전심의<개정 2022.5.12>

12. 내부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 <신설 2016.2.18> <개정 2018.12.18>

13.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진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18> <개정 2022.5.12>

14. 재무보고 과정의 적절성 및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18> <개정 2022.5.12>

15. 내부감사부서의 활동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신설 2018.12.18>

16.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18>

17. 그 밖에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13호에서 17호로 이동 <2018.12.18>] <개정 2016.2.18, 2022.1.19, 2022.5.12>

②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4.27, 2016.2.18>

1.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 [종전 제5조2에서 제6조2로 이동 <2018.12.18>]

2. 분기 및 반기 결산 결과

3. 매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4. 그 밖에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19, 2022.5.12>

5. <삭제 2016.2.18>

[종전 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18.12.18>]

제13조(부의절차) 제12조 제1항의 결의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 제12조 제2항의 보고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9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18.12.18, 2022.5.12>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12.18, 2022.5.12>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12.18>

제14조(소집절차)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소집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중전 제13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22.5.12>

제15조(의안설명) 회의에 부의될 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의안과 관련된 부서의 임원급 관계직원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실무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중전 제14조에서 제15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16.2.18, 2022.5.12>

제16조(의사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그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 의사록은 이사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04.1.19>

③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원회 결의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각 이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부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중전 제15조에서 제16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22.5.12>

제17조(감사록)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중전 제16조에서 제17조로 이동 <2018.12.18>] <개정 2022.5.12>

제4장 외부감사인 <신설 2018.12.18.>

제18조(선임 및 해임)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 후에는 해당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관계 법령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을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개정 2022.5.12>

제19조(계약)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감사 시간, 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동종 업종에 대한 감사경험, 감사인력의 경력, 중점감사분야 등)을 말한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약조건이 당초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② 위원회는 감사계약 체결 후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제20조(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과 외부감사 실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② 위원회는 감사계약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외부감사가 종료된 후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다음 연

도의 감사계획 수립과 외부감사인 선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④ 감사의견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고, 그 처리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⑤ 위원회는 외부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경고사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 향후 외부감사 절차 및 감사의견 형성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본조신설 2018.12.18]

제21조(소통) 위원회는 경영임원 등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외부 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관련 사항을 감사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18] <개정 2022.5.12>

제5장 평가 및 보고 <신설 2018.12.18.>

제22조(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보고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2.5.14> <개정 2018.12.18, 2022.5.1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사업연도마다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5.14>, <개정 2018.12.18>

③ 위원회가 판단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시정 의견은 제2항의 보고서에 반영하고, 그 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종전 제17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18.12.18>]

제23조(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위반 사실을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장에게 시정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사장에게 대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5.12>

⑤ 위원회는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5.12>

1. 회사 내 관련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련부서장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18]

제6장 보 칙 <신설 2018.12.18>, <개정 2022.5.12>

제24조(자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장이 자문의 배경, 내용, 자문 후 취한 조치 및 그 효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2>

[중전 제18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18.12.18>]

부 칙

이 규정은 2001.4.1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9)

이 규정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4.27)

이 규정은 2004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 업 비 밀
사외비 CONFIDENTIAL

부 칙(2009.10.21)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18)

이 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8)

이 규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5.12)

이 규정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7)

이 규정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 면 표 지)

회 의 명	제 차 감 사 위 원 회
의안번호	제 호
결의연월일	
공시여부	

결
의
사
항

(내 용)

1. 결 의 주 문
2. 제 안 이 유(개정이유)
3. 주 요 골 자
4. 참 고 사 항
 - 가. 관 련 법 규
 - 나. 예 산 조 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5. 안 건(별첨)
6.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안 건 명)

제 안 자	KT&G 감사위원회
보 고 자	○ ○ ○
제출연월일	20 . . .

210mm×298mm(인쇄용지70 g/m²)

[별지 제2호 서식]

(전 면 표 지)

회 의 명	제 차 감 사 위 원 회	보 고 사 향
보고번호	제 호	
보고연월일		
공시여부		

(안 건 명)

제 안 자	KT&G 감사위원회
보 고 자	○ ○ ○
제 출 연 월 일	20 . . .

210mm×298mm(인쇄용지 70g/m²)

[별지 제3호 서식]

감 사 위 원 회 소 집 통 지 서

수 신 :

제 차 감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나. 장 소 :

다. 부의안건 :

첨부 : 제 차 감사위원회 부의안 부. 끝.

20 년 월 일

KT&G 감사위원회 위원장

□

210mm×298mm(인쇄용지 70g/m²)

[별지 제4호 서식]

제 차 감 사 위 원 회 결 의 서

결 의 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장
결의일자	20 . . . (: ~ :)		장 소	
작 성 자				
의안 번호	제 안 자	제 목		결의결과
결 의 사 항				

210mm×298mm (인쇄용지 70g/m²)

